

부산남구공보



제 1252호 2023.9.27.(수)

선	기	관	의	장
람				
_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조 례

람

<u> </u>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2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5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4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6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13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7호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8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	24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공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국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

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 공자 본인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 본인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본인
-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 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설주차장 및 관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 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주차장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확산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주차 장 소유주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은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하다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 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 중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 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세 ~ 만 12세"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3세"를 "3세"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 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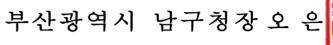
제9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다음과 같이한다."를 삭제한다.

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청년휴가 5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10일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20일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30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4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은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6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 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 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 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역비전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6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기본계획,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해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제7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 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②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 제8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7조에 따른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7. 적응대책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환경,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자문 등을 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 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제22조(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했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 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 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 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은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7호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8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부산

광역시 남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부산광역시 남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오 은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